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구별에 대한 법적 논의

Legal Distinction betwee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엄 성 희*
Eum, Sung 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기술 및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법제 |
| II. 우리 법제도에서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정의 | V. 관련 법률 정비 방안 |
| III.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모호성에 따르는 문제점 | VI. 결론 |

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의 공격 및 방어수단으로 경쟁기업에 이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자본적 활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적으로 부여된 가치를 가지는 재산권이라 가능한 부분이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은 모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요 자산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요소는 구별에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상 정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사업화 관련 법률에서 유기적이고 명확한 법률의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은 혼란과 의문을 가중할 뿐이며, 이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구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

본고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명확한 법적 정의 및 구별을 통해 관련 법제의 긴밀한 유기성 및 경계성을 고민하고자 하며, 이러한 부분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트렌드에 대응하는 법제의 실무적 모습일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기술, 지식재산권, 사업화, IP금융, 가치평가

<https://doi.org/10.35148/ilsilr.2021.48.219>

투고일: 2021. 1. 29. / 심사외일: 2021. 2. 4. / 게재확정일: 2021. 2. 15.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법학박사

Exprt Advisor,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Ph.D. in Law

I. 서론

세계 경제는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테슬라 및 애플 등의 기업들은 세계 경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라는 세계적 관심사에 편승하여 내연기관을 대체하기 위한 전기차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의 업체들도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의 모든 기초는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이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렇듯 민간 영역에서의 활발한 행보와 더불어, 우리나라 정부도 지식재산권 5대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한 지표는 세계 최상위권을 위치하고 있으며,¹⁾ 수많은 정책 및 법제도를 통해 이를 뒷받침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지식재산은 이미 기업 내에서 차지하는 자산 비중에서도 유형자산을 넘어선지 오래이다.³⁾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화가 기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⁴⁾. 이러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사업화에 대한 중요한 인식으로 인하여, 정부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사업화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기본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양한 법제도의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의 규정 및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개별 법률은 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 및 시행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의 경우 특허청에서 관할 및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관련하여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할 및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중첩 및 법제도 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모호한 사업화

1) WIPO에 따르면 2020년 지식재산활동에 있어 우리나라는 특허권 4위, 상표권 10위, 디자인권 3위로 통합 5위를 차지하고 있음.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WIPO, 2020, p. 8

2) 2020년 정부 R&D 기술사업화 투자 관련 예산은 24.2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 2020 정부업무보고 개요

3) Steve C. Lim & Antonio J. Macias & Thomas Moeller, "Intangible assets and capital structure", SSRN Electronic Journal, 2014, p. 4

4) 최병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와 거래에 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10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01, 140쪽.

개념을 내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용어의 변천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4가지 총칭이 법제에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무체재산권이란 용어는 「공정거래법」 제59조 및 여러 법률에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⁵⁾, 현행법에는 용어 자체의 명확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혼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이 글은 이러한 법률적 연계성과 모호한 사업화 개념이 발생시키고 있는 요소로 각 부처별 법령의 관할 및 시행에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모호성 및 구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별하여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법률적 공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우리 법제도에서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정의

1. 법률에서의 정의

1.1 지식재산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 제3호에서는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구별을 하고 있으며, 양자는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5) 「지식재산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6) 박준석, “무체재산권·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 한국 지재법 총칭(總稱) 변화의 연혁적·실증적 비판 -”,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4호, 2012, 112쪽.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⁷⁾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이라는 넓은 영역에 지식재산권이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기술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전부를 포괄하는 규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지식재산권 이외의 노하우 등 권리화 되지 않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1.3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지식재산권[법률에 따라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목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4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제2조 제4호에서는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정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의는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⁸⁾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특정분야 지식의 실제적 응용과정, 정차, 제조, 농업, 공업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화된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다.⁹⁾

3. 금융에서의 정의

3.1 기술금융

기술금융을 정의함에 있어 다양한 정의와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내리고 있는 기술금융의 정의는 “기술력 있는 기업” 또는 특허권 등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대출, 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¹⁰⁾, 기술평가를 통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R&D-창업-사업화 등 기술혁신의

8)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의 “Intellectual property (IP) refers to creations of the mind: inventions,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symbols, names, images, and designs used in commerce. IP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ndustrial property, which includes inventions (patents),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 indications of source; and Copyright, which includes literary and artistic works such as novels, poems and plays, films, musical works, artistic works such as drawings, paintings, photographs and sculptures, and architectural designs.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clude those of performing artists in their performances, producers of phonograms in their recordings, and those of broadcasters in their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9) 박재영,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15쪽.

10)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주요 쟁점 Q&A, 2015, 1쪽.

전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공급과 미래수익을 가져올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기술의 개발·사업화 내지는 기술혁신형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3.2 지식재산금융(IP금융)

지식재산금융은 산업재산권 같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식재산을 매개로 지식재산권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금융기능을 제공하는 금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²⁾ 지식재산금융은 권리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권리화 되었거나 권리화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사업화, 권리화된 기술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 권리화된 기술의 양도 및 이전 등 ‘권리화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¹³⁾

4. 소결

기술과 지식재산권은 그 경계가 모호하고 구분이 쉽지 않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상의 정의에서도 보여 지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기업의 자본적 활용의 대표적인 현물출자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는 다르게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지식재산권은 법률에 따라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발명진흥법」에서도 발명이라는 포괄적 요소와 산업재산권을 구별하고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금융에서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은 통상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 지식재산금융은 기술금융의 특수한 분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¹⁴⁾, 이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에 있어서는 법률상 정의에서 보다는 좀 더 명확히 구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술금융 평가의 대상을 토대로 보더라도 그 대상을 기술자산으로 무형자산으로서의 기술, 기술자산의 넓은 범위로 보아서 지식재산의

11) 이영학, 지식재산 금융 국내의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24쪽.

12)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2013, 2쪽.

13) 펜타노바, 지식재산 금융 국내의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24쪽.

14) 관계부처합동, 위의보고서, 3쪽.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자산으로 한정하여 그 대상이 지식재산권과 구별을 하고 있다.¹⁵⁾

III.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모호성에 따르는 문제점

1. 기술평가기관과 발명의 평가기관의 혼재

1.1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및 평가모델 보유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평가¹⁶⁾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만이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따른 기술평가를 위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다¹⁷⁾. 관련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¹⁸⁾

15) 손수정 등,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정책연구, 2014-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45쪽.

16)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1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3명 이상

나.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②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표 1-1〉 기술평가기관 지정 현황

평가관련 법령	소관 부처	지정기관 유형	지정기관	기관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 통상 자원부	기술평가기관 제23조 (현물출자) 제35조 (평가기관 지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나이스디앤비, ㈜케이티지, ㈜티밸류, 유미특허법인, 특허법인 도담, 한국기업에이티(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윅스, ㈜이크레티브,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다래, NICE평가정보(주)	31

1.2 발명의 평가기관

발명의 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IP의 가치금액을 산정하는 전문기관이다.¹⁹⁾ 기술평가관련 전문 인력 및 관리조직 등 일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신뢰성 높은 고품질 평가서비스 제공 및 발명의 평가시장 활성화 유도를 통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기여하고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의하여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²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하고 있다.²¹⁾

18) <https://www.ntb.kr/tba/selectTechApprOrganList.do>

19) 특허청, 보도자료, 2019, 1쪽.

20) http://www.kipa.org/kipa/ip001/kw_business_0604.jsp

21) 「발명진흥법」 제28조, 영 제12조, 요령 제72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평가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전문가

나. 기술평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의 전문가

※ 가·나 목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한 10명 이상

2. 발명의 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관리조직 보유

3. 발명의 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평가모델 보유)

4. 발명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 구축

5. 시험·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장비 보유

6.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 수행 방법 등 평가 수행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등 그 밖의 평가수행 관련 인프라 보유

〈표 II-1〉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

평가관련 법령	소관 부처	지정기관 유형	지정기관	기관수
발명진흥법	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 제28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발명진흥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유플스,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다나, 나이스평가정보(주), (주)이크레더블, 신용보증기금, 특허법인 도담, (주)케이티지, 한국기업데이터(주), (주)나이스디앤비	20

1.3 문제점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기술평가지장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발명의 평가기관은 신뢰성 높은 고품질 평가서비스 제공 및 발명의 평가지장 활성화 유도를 통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기여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술평가기관과 발명의 평가기관은 목적에서 보았듯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같이 동일 유사한 목적의 평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평가기관의 혼재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구분의 모호성과 법률적 입법의 일관성 결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지정된 기관과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중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발명진흥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유플스,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다나, (주)나이스디앤비, (주)이크레더블, 특허법인 도담, (주)케이티지와 같이 기술평가기관과 발명의평가기관 모두 지정되어 있는 점에서도 양 평가기관 간의 모호성을 볼 수 있다. 이는 2017년 7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²²⁾에 특허청을 추가하였다. 기술평가기관과 발명의 평가기관의 모호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한 기업의 지식재

2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관계중앙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기상청

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현물출자 등 자본적 활용에 있어 평가기관 선택 및 평가 대상에 대한 기업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2. 현물출자에 있어 문제

2.1 상법상 현물출자

「상법」상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외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 출자를 의미하며, 회사가 자본금을 조달하거나, 개인기업이 회사로 전환하거나, 회사를 분할하거나, 산업재산권을 기업화하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²³⁾ 즉, 금전을 갖지 아니한 자가 출자를 위해 재산을 환가함으로써 생기는 차손을 피할 수 있고, 회사가 설립 후 구입해야 할 자산을 마침 출자자가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 재산을 출자 받음으로써 출자자로부터 금전을 출자 받아 다시 출자자로부터 재산을 구입하는 이중거래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다는 데에 이 제도의 장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가치가 없는 재산이 출자되거나 출자재산이 과대하게 평가되어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현물출자의 경우 진정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출연되고, 그 가치에 부합하는 주식이 발행되어야 한다.²⁴⁾ 따라서 현물출자를 변태설립사항으로 하여 추가적인 규율을 가함으로써 출자의 공정을 기하고 있다.²⁵⁾

2.1.1 현물출자 목적물

「상법」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²⁶⁾. 현물출자의 목적물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동산, 부동산, 채권·어음 등의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 다른 회사의 주식은 물론이고 영업 자체, 영업권, 상호권 그리고 계약상의 권리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자본단체인 주식회사에서는 노무출자나 신용출자는 재산적 가치가 불분명하고 당장 실현될 수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23) 권재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193쪽.

24) 송옥렬, 상법강의(제6판), 홍문사, 2016, 738쪽.

25)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4판), 박영사, 2016, 241쪽.

26) 이철송, 위의 책, 242쪽.

2.1.2 검사인 검사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검사가 있어야 하지만 (상법 제299조 제1항),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의2). 여기서 “공인된 감정인”이하 함은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한다.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인된 감정인에는 감정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포함된다.²⁷⁾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9조의2).

2.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2.1. 기술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기술이전촉진법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기술이전촉진법 제23조 제1항의 경우, 기술이전촉진법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4의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촉진법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2.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은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서 산업재산권 등을 현물출자 대상으로 인정하고 산업재산권 등을 평가할 기관을 정하여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평가기관의 평가내용은 「상법」

27) 배효성/엄성희,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제26집 제4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16, 140쪽.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²⁸⁾

2.3 외국인투자 촉진법

현물출자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8호 라목은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것”으로서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2.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에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실용실안법에 따른 실용실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출자(거주자가 해당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3항에서는 산학협력단 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

28) 조경선, “산업재산권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산업재산권 제16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 443쪽.

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의4에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 출자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6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1조에서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공간정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러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문제점

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상에 규정이 혼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에 대한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의 경우 공인된 감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에 대한 공인된 감정인으로 보는 규정에 있어서도 과연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대상인 기술이 지식재산권을 포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평가기관에 있어 현존하고 있는 기술평가기관과 발명의 평가기관이 나누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기업에서의 수요가 많은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에 있어 전반적 기술을 포괄하여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술의 평가기관과 지식재산권을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는 발명의 평가기관 간의 평가 영역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른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와 개정이 뒤따라야 함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진다.

IV. 기술 및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법제

1. 기술 및 지식재산 사업화의 법률상의 정의

기술사업화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 기술사업화는 협의의 기술사업화와 광의의 기술사업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순히 자체개발 또는 외부로부터 획득한 기술을 개량·개선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협의의 기술사업화라고 하고, 광의의 기술사업화는 유망 아이템의 탐색 및 사업타당성 진단에서 개발된 기수자산을 이전, 창업, 출자 등에 활용하고, 필요자금을 투자 또는 용자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²⁹⁾ 다른 시각에서는 보유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생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거나 그 과정에 필요한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정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³⁰⁾

기술사업화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 되고 있으며, 먼저 이와 관련한 법제도에서 법률상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구축 및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과 이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식재산 전반의 기본적 틀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사업화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정의는 없으나 제25조의 사업화에 대한 내용을 비추어 살펴보면 지식재산의 유동화(流動化)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용자, 신탁, 보증, 보험 등으로 볼 수 있다.

29) 여인국, 기술사업화 이론과 실제, 학현사, 2013, 2쪽.

30) 김현오/김홍영, 기술사업화 정책 동향, KISTEP, 2019, 2쪽.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 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계획, 기반의 확충, 촉진, 금융지원 등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주기에 맞는 포괄적 규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화에 대하여 정의는 제2조 제3호에서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3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발명의 진흥을 위한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직무발명의 활성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발명의 권리화 지원, 발명의 사업화 촉진, 산업재산권 서비스,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등 발명을 기본으로 하는 권리화, 사업화 관련 규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사업화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정의는 없으나, 제4장의 발명의 사업화 촉진에 규정된 제28조에서부터 제40조까지의 내용을 비추어 살펴보면 산업재산권의 평가를 통한 사업화지원, 산업재산권의 담보를 통한 자금 사업화 자금의 간접적 지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매매 및 이전, 시작품 제작 지원, 사업화를 위한 규격의 개정 요청, 조달시장을 통한 우수발명품의 사업화 지원, 세제지원 등의 산업재산권 관련 사업화의 포괄적 규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³¹⁾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³²⁾을 촉진하고 산업기

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국제산업 기술협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등을 통해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기술의 혁신과 이에 따른 사업³³⁾과 성과물³⁴⁾, 사업화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사업화에 대하여 정의는 제2조 제9호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소결

기술과 지식재산권 사업화와 관련하여서도 그 경계가 모호하고 구분이 쉽지 않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상의 정의에서도 보여 지고 있다. 기술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통해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법률상 체계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³⁵⁾

기술사업화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기본법 상 큰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인 정의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기술의 사업화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대상을 민간뿐만 아니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포괄하고 있음

31) 제2조 제1호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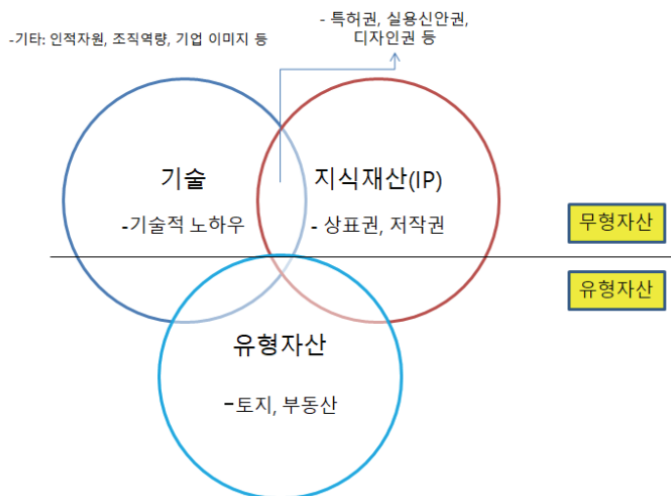
32) 제2조 제2호 “산업기술혁신”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3) 제2조 제7호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4) 제2조 제 8호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과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35) 고동원, “창조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성균관법학 제28권 제3호, 2016, 506쪽.

을 보여주고 있다.³⁶⁾



〈그림 1-1〉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관계

* 출처: 박재영,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추진 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법률에서 지식재산 기본법상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음을 위에서도 살펴본바 있다. 따라서 기술과 지식재산권은 구별하여 사업화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V. 관련 법률 정비 방안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사업화 되는 것을 촉진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36) 손승우,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법제도 체계에 대한 분석”,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948쪽.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관련하여 기술 및 사업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술이라는 가장 큰 개념을 통해 지식재산, 지식재산권,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등을 포괄하여 법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부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상 필요하고 체계화 되어 있는 법률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의 범주를 포괄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소관 부처인 특허청 관할 법률인 「발명진흥법」과의 중첩이나, 대상 범위의 명확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도모하는 부분에 있어 기술이라는 정의의 명확성과 한계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조 제1호의 기술의 정의에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규정에서도 보이듯이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음에 기술의 범위의 한계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2조의 제1호 기술의 정의에 있어 가목의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의 경우 법률로써 권리화 되지 않는 지식재산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기술평가 및 기술 유동화,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발명진흥법」과의 중첩성 및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더욱이 위에 언급한 기술의 정의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의 종류와 연구개발형태, 기술 및 시장의 특성 등이 다양해지고 복잡성이 증가되는 최근 추세는 물론 개발 성과의 결과물 중 하나인 지식재산의 경우도 그 기술 분야와 제품 종류에 따라 창출되는 지식재산 유형의 분포가 상이할 뿐 아니라, 주요 이해관계자 및 지식재산의 유통경로와 이에 요구되는 지식재산 관리 기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의하고 있는 기술과 지식재산의 구별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³⁷⁾

2.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발명을 장려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법령상 사업화가 어떠한 부분이라는 해석상 이해를 할 수 있을 뿐, 사업화에 대한 정의를

37) 김상훈/김계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 산업연구원, 2020, 31쪽.

내리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사업화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제2조에 있어 사업화 정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와 궤를 맞추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화를 산업재산권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발명의 평가 및 담보, 매입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기술의 사업화와 지식재산권의 사업화의 구별의 명확성 및 정책 주체에 대한 모호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명진흥법」에서는 특허청 산하 기관의 설립근거와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발명진흥법」상의 사업화 사업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특허청 산하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며, 제52조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한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으로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사업 범위 중 사업화와 관련하여 제53조 제1항 제7호의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을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55조의5에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으로 제55조6에 규정하고 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사업 범위 중 사업화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서 국가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화 관련 규정에 있어 한국발명진흥회의 경우 「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화 대상을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허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경우 국가 지식재산의 사업화로 그 대상을 국가 지식재산으로 하고 있어 명확한 정의가 발명진흥법상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지식재산 기본법」상의 지식재산의 정의를 따라서 보더라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사업화 대상인 기술과 중첩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첩되는 부분은 개정을 통해 명확한 경계를 구축하여야 관련 유관기관 및 사업화 전반에 있어서도 명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화 대상인 특허기술의 경우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므로 특허권 내지 산업재산권으로 「발명진흥법」상 법제의 모호성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세계 경제 흐름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 예산 및 민간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견고함과 연계성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는 연구개발의 시작에서 마지막 단계인 제품화를 통한 시장 출시까지 일련의 과정의 마지막 최종 단계이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사업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지원을 통한 사업화에 대하여 다방면의 지원을 통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경제 순환 구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어 진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매우 중요하고 기업, 나아가 국가에 있어 매우 주요한 자산임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의 창출에 대한 부분은 물론 활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금융에서의 활용 및 이에 대한 가치평가가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활용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례로만 보더라도 금융관련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도 기술가치평가, 특허기술가치평가로 평가기관 및 관할 부처에 따라 명칭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 법제의 정비를 통한 효율적이고 연계적인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사업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³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법제는 기본적으로 기술 및 지식재산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구별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기본법에서의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에 이러한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을 포괄하여 사용함으로써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함으로써 인해 「발명진흥법」과의 중첩성을 볼 수 있었으며, 명확하지 못한 법제를 통해 혼동과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명확한 기술 및 지식재산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통해 법의 정체성과 명확성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38) 손수정, “기술사업화의 주도(push)와 견인(pull)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정책 제2권 제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103쪽.

참고문헌

1. 단행본

-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2013.
-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주요 쟁점 Q&A, 2015.
- 김상훈/김계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 산업연구원, 2020.
- 김현오/김홍영, 기술사업화 정책 동향, KISTEP, 2019.
- 박재영,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 _____,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정책연구 2014-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 여인국, 기술사업화 이론과 실제, 학현사, 2013.
- 이영학, 지식재산 금융 국내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0.

2. 학술지

- 고동원, “창조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성균관법학 제2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501-505쪽.
- 박준석, “무체재산권 · 지적소유권 · 지적재산권 · 지식재산권 - 한국 지재법 총칭(總稱) 변화의 연혁적 · 실증적 비판 -”, 법학 제53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09-160쪽.
- 배효성/엄성희,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제26집 제4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16, 131-146쪽.
- 손수정, “기술사업화의 주도(push)와 견인(pull)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정책 제2권 제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85-106쪽.
- 손승우,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법제도 체계에 대한 분석”,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929-957쪽.
- 조경선, “산업재산권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산업재산권 제16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 431-466쪽.

최병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와 거래에 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10호, 한국지식재산
학회, 2001, 131-145쪽.

Steve C. Lim & Antonio J. Macias & Thomas Moeller, “Intangible assets and capital structure”,
SSRN Electronic Journal, 2014, pp. 1-38.

[Abstract]

Legal Distinction betwee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m, Sung Hee*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already been classified as an important asset worldwide.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be used in various ways. It can be used by competitors as a means of attack and defense by companies, and can also be used for capital use. It is possible because it has the legally granted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oth technical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major assets of their value. However, these two factors have ambiguity in the distinction and represent this problem in legal definitions, which only adds confusion and doubt to the lack of support for organic and clear legislation in commercial law, which does not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clear legal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between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close organic and vigilance of related legislation, which would be a practical aspect of legislation in response to rapidly changing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trends.

[Key Words]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mercialization, IP financing, Valuation

* Exprt Advisor,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Ph.D. in Law